

별첨 4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안내**□ 편의제공 대상**

- '26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채용공고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(신청절차)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제공에 필요한 증빙서류 원본을 홈페이지 입사지원 작성 시 첨부 서류로 등록
 - 편의제공 안내문 확인
 -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
 - (필요시) 구체적인 내용 기재
 -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
- (신청내용검토 및 결과안내)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진단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 내역 검토 및 결과 개별 안내(문자 및 메일 안내)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

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

-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편의제공 내용과 증빙서류 확인 필수(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- ※ 전형별 편의제공은 이전 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·접수

-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S/W 탑재 컴퓨터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
-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
 - ※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- 편의제공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채용 공고 게시판의 질문하기 및 인재경영팀 채용담당자(042-612-883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장애유형 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- 필기, 서류 전형

장애유형 및 정도			필기, 서류전형		비고
	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	
지체 장애인	상지	공통	-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[논술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장애인증명서	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-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술형 1.2배)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장애인증명서	기준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장애인증명서	기준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-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장애인증명서	기준 1~6급
뇌병변 장애인	공통		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

장애유형 및 정도		필기, 서류전형		비고
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	
		•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• [논술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)	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•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술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장애인증명서	기준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(사본)	기준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장애인증명서	
시각 장애인	공통	•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, 보조공학 기기 지참 허용 • [논술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장애인증명서	
	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(사본)	기준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기준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장애인증명서	기준 3급 1, 2호
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(사본)	기준 4급 2호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장애인증명서	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	장애인증명서	기준 4 5급 1호
		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장애인증명서	기준 5급 2호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인 사람	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(사본)	기준 6급 중 좋은 눈시력 0.3이하
		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	장애인증명서	기준 6급
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•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기준 2~6급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· 일시적 신체장애	•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-

※ 확대문제지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※ 확대답안지(선택형시험)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
※ 축소문제지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1종류

※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○ 면접전형

장애유형		편의지원 내용
지체장애	상지	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하지	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사용자)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장애		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·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면접시간 1.5배 연장
시각장애		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 · 관련 서식 점자 지원 ·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면접과제 작성 검토 시간 1.5배 연장
청각장애		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, 필담면접 등) 지원 ·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·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면접시간 1.5배 연장
기타		·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

별첨 4-1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서

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서					
신청인	채용분야		이메일		
	성명		장애유형		
	생년월일		상지/하지 (지체장애의 경우)	상지	
			하지		
	연락처		장애등급		

편의지원 신청 전형(신청시 ○ 표시)			
필기전형	서류전형	1차 면접전형	2차 면접전형

편의지원 신청 내용	
해당전형	편의지원 항목

편의지원 신청 사유

* 제출 증빙서류 :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, 의사진단서 1부.

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

별첨 4-2 의사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(해당 응시자)

-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 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- 발급일자: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('26.8.7.) 기준 2년 이내 발급
-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 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(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각 명기)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※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(시험시간 연장 신청 시 →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)
 - ※ '편의지원 신청서' 내용과 의사진단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시
시각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시간이 더 필요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기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증상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 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

※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